

제 1958 호

1987. 5. 18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영보순
출판인: 보산김성현
간행: 734-8111-3
인쇄: 서울특별시 불광출판사
전화: 734-3337

제	번호	발행	일자	부	속
1958	호	1987. 5. 18			

시보

차 례

- 공문시행
 - 대한민국헌법개정추진추진부..... 3
- 조 례
 - 제 2186 호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성공제조례..... 4
 - 제 2187 호 : 서울특별시 영웅인정심정위원회 및 학문영예훈장조례..... 5
- 고 사
 - 제 310 호 :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계획승인..... 6
 - 제 313 호 : 사보실분동록..... 7

<이면계속>

공									
발									

1. 시 공무원용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민원서류와의 관계를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316 호 :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자 준수 사항 고시 중 개정 고시 7

○ 공 고

제 291 호 : 도시계획시설(수도)사업실시계획안공람 7

제 293 호 : 제 2 종전거공사업면허취소 9

제 300 호 : 제 2 종전거공사업면허취소 9

○ 구 공 고

구로구제 14 호 : 도시계획시설(학교)시행허가예따른공람 10

성동구제 26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시행완료 11

○ 사 령

공 문 시 험

(관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법무 62142-677

(731-6156)

1987. 5. 8.

수 신 : 수선처참조

제 목 : 대한민국 헌법법령집 추록배부

1. 대한민국 헌법법령집 제 104 회 추록을 다음과 같이 배부하
수령즉시 가계정리하여 법령집 활용에 차질 없도록 할것.

가. 배부기간 : '87. 5.11 ~ 5.16

나. 배부대상 : 대한민국 헌법법령집 보유부서

다. 배부장소 및 방법

· 본청 : 법무담당관실에서 각과 분임물품 출납원인장 날인수령.

· 구청 및 사업소 : 운송배부

2. 대본보유부서는 가계정리 상태를 점검하여 미정리된 추록을
제 104 회 추록과 함께 수령, 정리하여 법전관리에 철지를 기달것. 끝.

* 이내용에 관한 시행문은 따로 보내지 아니함.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 서관 1, 서과 1-5, 9, 01, 15, 18, 19, 21, 23-32, 34-47, 39, 43, 44, 46, 50,
52, 53, 59-65, 서주 1-17, 서보 1-7, 10, 13, 15, 서사 05, 06, 08-11, 20, 22,
23, 34, 38, 41, 42, 52, 56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중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5월 8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④

④ 서울특별시조례제 2186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 원 입 장 료

제 3 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이 법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서울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공단은 그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단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원 별	사 용 기 준	금 액 (원)	비 고
일 반 공 원	어 른 1 회 당	200	단, 과는 기본요율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인하 조정할 수 있음. 조기산책의 경우에는 월당공원 입장료의 10.일분율 징수함.
	청 소 년 "	150	
	어 린 이 "	100	
어 린 이 대 공 원	어 른 "	600	
	청 소 년 "	300	
	어 린 이 "	0	
서 울 대 공 원	어 른 "	1,000	
	청 소 년 "	800	
	어 린 이 "	500	
월 목 계 1 근 립 공 원	어 른 "	800	
	청 소 년 "	600	
	어 린 이 "	500	

<p>주) ○ 어린이 : 만 7세이상 12세 이하의자 (다만 유희시설 및 운동시설 사용료의 경우는 만 4세이상 12세이하의 자로 함)</p> <p>○ 청소년 : 만 13세이상 18세 이하의 자</p> <p>○ 어 른 : 어린이, 청소년 및 만 6세이하의 자 이외의 자</p> <p>○ 단 체 : 30인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1987년 5월 8일 서울특별시장 임보현 ④</p> <p>◎ 서울특별시조례제 2187 호</p> <p>서울특별시립용인정신병원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p> <p>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립용인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p>	<p>적으로 한다.</p> <p>제 2 조 (위탁) 병원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 7의 1번지에 둔다.</p> <p>제 3 조 (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법인에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운영의 위탁을 받고자하는 의료법인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 4 조 (입원 및 퇴원)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p>제 5 조 (공유재산의 사용등) ① 시장은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② 병원운영에 다른 경비는 환자의 진료수입으로 충당한다.</p> <p>제 6 조 (수가) 진료수가는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 조례에 의한다.</p> <p>제 7 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자 진료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자는 병원시설과 무상으로</p>
---	--

사용하는 공유재산물 병원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㉑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 기타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㉒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㉓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조 (감독) ① 시장은 효율적인 병원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 7조의 의무를 위반한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가.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지적승인로서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 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310 호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29호(87.4.3)로 변경결정된 다음 도시계획시설 (하수도)를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던기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구조구축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 5. 8.

서울특별시장

구 분	서 설 명	위 치	규 모 (M)	비 준
기 경	하 수 도	구로구오류동 55의 70-63의 1	B=4~4-5 L=360	
변 경	"	"	B=4 L=360	L=190 M구간위치 및 복원조정

나.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p>◎서울특별시고시제 313 호</p> <p>사 료 성 분 등 록</p> <p>자료관리법 제 22 조 제 3 항의 규정 에 의거 자료성분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1987. 5. 8. 서울특별시청</p> <p>1. 제정연차명 : 제이원내합자료공실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경동보구 개림 동 629-6 3. 대표자 : 홍 연 석</p>				
<p>4. 성분등록 내역 (단위:%)</p>						
등록번호	자료의 명칭 및 용도	사 료 성 분 등 록				
		조단백질	조지방	조단백	조지방	합 계
13-1048	(형태:역상) 착유 1-1호:비유량 15%이하	15.0 이상	0.1 이상	3.0 이하	12.0 이하	0.2 이상
						0.1 이상

<p>◎서울특별시고시제 316 호</p> <p>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자 준수사항 서행고시중개정고시</p> <p>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자 준수사항 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p> <p>1987. 5. 8 서울특별시청</p> <p>운전자 준수사항 제 2 호중 "깃봉" 다음에 " (명소는는 본 매트 속에 걸어 넣고 필요시에만 풀출시키는 장치가 된 깃봉 (계외) "를 추가 한다.</p>		<p>부 칙</p> <p>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 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공 고</p> <p>◎서울특별시공고제 291 호</p> <p>도시계획시설(수도) 사업실시계획안공람</p> <p>1. 우리시 고시 제 10 호('87.1.14) 및 같은 고시 제 57 호('87.2.6) 로 도시계획 시설(수도)결정 및 지적승인된, 중로구 복화동 3-1 번지 의 10 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p>	
--	--	---	--

제 25 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따라 이틀 일 반인에게 공람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아래 공람장소에 두고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동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외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7. 5.8.
서울특별시청

가. 사업의 시행지: 종로구 예파동 3-1 의 10 필지

종 류	명 칭	면 적	비 고
도시계획시설 (수도) 사업	해좌, 외용 가압장 동제합 공사	186.6 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면적: 148.89 m² 연 면 적: 238.93 m² 용도구분: 가압장 1 동

다.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청
 라. 사업과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 1987.12.31.
 나. 사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따로붙임
 바. 공람장소: 종로구청 수도공사과

사.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 공람장소에서 상담.
 따로붙임: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1부(생략)
 2) 관계도면 1부. 끝.

1. 토지조서

순번	지 번	지 목	지 적	면적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소유권의의 의령리명세
					주 소	성 명	
1	종로구예파동 1-19	학교	4.0 m ²	4.0 m ²	종로구예파동1	학교법인동성학원	-
2	" " 1-20	학교	20.3 m ²	20.3 m ²	-	서울특별시	-
3	" " 1-11	구거	4.3 m ²	4.8 m ²	-	"	-
4	" " 3-5	도로	46.0 m ²	46.0 m ²	-	"	-
5	" " 3-6	구거	3.2 m ²	3.2 m ²	-	미 등 기	-
6	" 명륜동1가2-38	구거	5.9 m ²	5.9 m ²	-	서울특별시	-
7	" " 2-39	학교	50.4 m ²	50.4 m ²	종로구예파동1	학교법인동성학원	-
8	" " 2-40	도로	36.3 m ²	36.3 m ²	-	서울특별시	-
9	" " 2-41	학교	10.5 m ²	10.5 m ²	-	서울특별시	-
10	" " 5-117	도로	2.8 m ²	2.8 m ²	-	서울특별시	-
11	" " 31-30	구거	2.4 m ²	2.4 m ²	-	서울특별시	-
계	11 필지		186.6 m ²	186.6 m ²			

2. 시정물조사						
순번	소재지	직장물종류	규모, 규격	면적수량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1	예화동 3-5	지상가건물 1동	스레트 세면 벽돌조 24㎡	9㎡	-	서울특별시
2	명동 1가 2-39	지상상록묘류 (원래묘참나 무)	수고 3 ~ 5m 균원직경 11 ~ 20cm	23주	종로예화1동	학교법인 동성학원
3	예화동 3-5 및 명동 1가 2-39	지상경제담장	석축및 석벽물 조각조	장인: 23㎡ 높이: 2.5 ~ 3.5m	종로구 예화1동	학교법인 동성학원
<p>◎서울특별시공고제 293 호</p> <p>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p> <p>국세징수법 제 7 조 규정에 의거 하 락 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 소지업체에</p>				<p>대하여 면허를 취소처분하고 전기 공사업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한다.</p> <p>1987. 5. 8. 서울특별시</p>		
면허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사항	사유	
908	동일전공사	강남구 감원 동 36-13	김동일	면허취소	국세징납	
<p>◎서울특별시공고제 300 호</p> <p>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p> <p>국세징수법 제 7 조 제 1 항 및 2 항 규정에 의거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p>				<p>소지업체에 대하여 면허를 영일정지 처분하고 전기공사업법 제 42 조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한다.</p> <p>1987. 5. 5. 서울특별시</p>		
면허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사유	
604	쌍용양재전	구로구 독산 동 146-1	박상삼	영일정지 2월 87.5.8 ~ 87.7.8.	국세징납	

구 공 고

◎구로구공고제 14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예따른공공완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74 호 (82.9.11) 로 시행허가하고 같은 고시 제 72 호 (85.10.24) 로 변경허가한 도시계획사업 (학교) 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변경허가신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람공고 한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오니 의견이 있을사는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시행지: 구로구 시흥동 산 100-4 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학교), 동일여차중·고등학교다. 사업시행자주소: 구로구시흥동 산 100-4 학교법인 동일학원
삼 명: 이사장 한 명 숙

라. 사업규모

구 분	당 초 시 행 허가면적 (㎡)	변 경 시 행 허가면적 (㎡)	비 고
대 지 면 적	39,779	43,585	증 3806㎡
건 속 면 적	3455.22	7614.71	증 4159.49㎡ (기존건축물 포함)
건축연면적	13235.67	29975.93	증 16740.26㎡ (기존전용량: 16705.51㎡) 급회중 (지하층: 33.75㎡)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당초: 1982.9.20 ~ 1987.6.30
변경: 1982.9.20 ~ 1987.12.31
바. 공람기간: 87.5.8 ~ 87.5.22
(14일간)
사. 공람장소: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전화: 856-4415)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1987. 5. 8.

구 로 구 청 장

◎**성동구 공고제 26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완료

1. 서울서고시 제 812 호 (84.12.31) 로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허가되고 성동구고시 제 190 호 (86.12.27) 로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변경허가된 우리구 관내 옥수동 산 6-37 에서 옥수동 455 번지간 도로 개설 공사가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2. 관제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 5. 8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성동구옥수동산 6-37 에서 옥수동 455 번지간

나.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명 칭: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중구내정로 2 가 305 중앙산업(주) 규 정 라. 사업의규모:

도로개설 $B=6m, I=312m$
 옹벽설치 $H=1.2m, -4.5m, L=273m$
 배수관 $D=300\% - 600\%, L=432m$
 L 형측구 $L=660m$
 제단설치 $H=1$ 개소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 수 : 85. 2. 6

준공예정일 : 87. 5. 30

바. 위치 및 계획장년 도면: 따로붙임 생략

사. 준공도면: 따로붙임 생략

아.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445-8705) 로 문의 바람.

사 령

◎ 1987년 5월 1일

령제 131 호

성 명	발 령 사 랑	현 부 서	직 급
한 복 연	서울특별시 내부국 근무	총 무 처	기재과 과
강 용 선	"	"	전기과 과
임 경 심	"	"	"
조 성 일	"	"	토목과 과
최 합 훈	"	"	건축과 과
채 화 정	"	"	환경과 과
오 해 영	"	"	농림과 과

◎ 1987년 5월 4일		명제 132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신재준	지방별정직 8급상당(공해추정기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한강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		
명제 134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종훈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상종파	지방행정주사보	
명제 135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인철	도봉구	서대문구	지방별정직 7급상당	
김기환	구로구	마포구	"	
박우순	마포구	구로구	"	
황선호	서대문구	김포수원지사무소	"	
명제 136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효상	원에 의하여 그직을 명함	한강관리사업소	지방별정직 7급상당	
명제 137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위	직급
오공표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건 책에 처함	종로구	건축과장	지방건축기과
김중호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거 건책 에 처함	울림떡실비 담당관	통신제장	지방통신기과
서부열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종로구		지방건축기과보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비고
	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 직에 처함			
김이환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 직에 처함.	심복구		지방연구사보
박노윤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 직 3 월에 처함.	중로구		지방연구사보
이중호	불문 (경고) 서울특별시 제 1 인사위원회의 결사함	새문나루회관	전과재정	지방연구사보

© 1987년 5월 11일

명제 138 호

성명	발령부서	발령호봉	발령직급	비고
신중수	마포구	1 호봉	지방토목기사보시보	심구
이우필	동자구	"	지방선축기사보시보	
이종희	김포수원지사무소	2 호봉	지방화물기사보시보	
오만석	총무과	"	"	
조기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	지방수과사보시보	
이달주	보건환경연구소	"	"	
이종희	경동구	1 호봉	"	
윤중섭	보건환경연구소	"	지방연구사보	
정중훈	"	2 호봉	"	
안유연	총무과	1 호봉	지방사서서기보	
김영용	성동구	3 호봉	지방토목기원보시보	
김지창	마포구	4 호봉	"	
이상호	강동구	"	"	
윤환식	중동구	2 호봉	지방토목기원보시보	
고삼주	영등포구	4 호봉	"	
심형두	은평구	2 호봉	"	
김종호	서대문구	4 호봉	"	

성 명	발령부서	발령호봉	발령직급	비고
문원주	관악구	3호봉	지방포육기원보시보	신규
윤종민	상동구	4호봉	지방기계기원보시보	
김수호	한강관리사업소	1호봉		
김효성	영등포구	5호봉	지방기계기원보	
최승목		4호봉	지방기계기원보시보	
이정호	응산구	3호봉		
강위철	공업시험소	4호봉		
김기혁	관악구	2호봉		
천상영	강서구	1호봉		
조병화	강동구	4호봉		
박재경	마포구	4호봉		
이병권	한강관리사업소	4호봉		
박노용	종로구	4호봉		
임성춘	중구	1호봉		
김현철	한강관리사업소	2호봉		
김상윤	성북구	1호봉		
주정환	서대문구	4호봉		
최규동	한강관리사업소	4호봉	지방화공기원보시보	
박준길	성동구	1호봉		
김정용	한강관리사업소	3호봉		
안병정	동대문구	5호봉		
황문숙	구로구	1호봉		
최재숙	구의수원지사무소	1호봉		
김중구	죽도수원지사무소	5호봉		
안재출	한강관리사업소	2호봉		

© 1987년 5월 11일자

명적 139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중구	서울특별시 경찰국 파견 ('87.5.11 - '87.12.31)	운수 2과	지방기계기사
박광수	서울특별시 경찰국 파견해제		

제 1358 호

서

본

1987. 5. 8 15-15

순	과	명	출	출	회	권	비
번	목		발	판	계	이	고
제 1358 호	고급행정	요승환	일본행정고급	고급행정	'87.5.1	일본정부	
출판권	부사보		부처대학		-7.18		
서 울 북 현 시 관							